

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(신·구 조문대비표)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외국물품등”이란 외국물품,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,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을 말한다.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제7조의2(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) ① ~ ⑦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「수출용원재료에 ----- ----- -----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의2(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과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사용소비신고 등이 수리된 물품에 대해 다시 사</p>

제17조(보세운송) ① ~ ②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중 보세관매장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물품을 보세관매장, 인도장 또는 국외반출을 위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신설>

「관세법」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B/L 분할·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소비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.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제17조(보세운송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「보세관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-----.

제17조의2(물품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특례) ①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간에는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8호의2서식

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절차를 생략하여 화물의 원활한 이동 지원

○ 고시명칭 기재

○ 현행 물품단위 반출입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원활한 물품의 이동 지원

및 제18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에는 보세공장과 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.

③ 입주기업체가 동일법인에 해당하는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입주기업체는 물품 반출입 내역을 보세사가 자체 기록·유지하고,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 생략 대상에서 사용소비신고 등이 수리되지 않은 B/L단위로 재고관리하는 화물은 제외한다.

○ FTZ ↔ 보세공장 ↔ 복합물류보세창고 간 물품의 반출입절차 간소화

○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물품 반출입 절차 생략 등 자율관리 확대

○ 사용소비신고되지 않은 B/L단위 수입화물은 정식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 필요

제28조(폐기의 감독) ① ~ ② (생략)

제28조(폐기의 감독) ① ~ ② (현행과 같

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품인 경우 업체의 사전 신청을 받아 자체 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4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음)

③ ----- 제
조업 입주기업체의 -----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재검토기한) ----- 「훈령·
예규 -----
----- 2024년 1월 1일

----- 12월 31일 -----

부 칙<관세청고시 제2023-00호(2023. 0. 00.)>

이 고시는 202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

○ 자체 폐기대상물품 지정
제도의 이용대상 명확화

○ 띄어쓰기 수정

○ 재검토기한 설정

다.